

1. 의결주문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생산(수입) 및 판매 등의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연 4회(분기별 1회)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중 “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”를 “전년도의”로 하고, “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”를 “매년 2월 말일까지”로 한다.

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보고) 영 별표2에 다른 원목생 산업,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 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<u>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</u> (수입)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 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<u>매 분기 말</u> <u>일의 다음 달 10일까지</u> 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제출(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 다)하여야 한다.	제30조(보고) ----- ----- ----- <u>전년도의</u> ----- ----- ----- <u>매년 2월</u> <u>말일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상 호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0000년도 사업 실적 보고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0000년도 생산(수입)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(단위: m³, 톤)

목재생산업의 종류	원목의 수종 및 목재제품의 종류 (원산지/제조국)	생산량(수입량)		판매량		재고량 (A-B)
		전 년도 실적	해당 년도 실적 (A)	전 년도 실적	해당 년도 실적 (B)	

끝.

* 작성방법

1. 원목생산업의 경우: 원목의 수종별 생산량·판매량·재고량을 적습니다.
2. 제재업의 경우: 목재제품의 종류별 생산량·판매량·재고량을 적습니다.
3.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: 수입한 원목의 수종별 및 목재제품의 종류별 원산지(제조국)·수입량·판매량·재고량을 적습니다.

발 신 업 체 명 의

직인

시행

우

주소

/

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 /